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402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영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6. 18.

판결 선고 2020. 8. 13.

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9. 3. 27. 선고 2018가소 439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6. C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무렵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6. 7.경까지 총 48회의 할부금중 31회를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16. 9. 4. 이 사건승용차의 전면부 등이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승용차는 차량 수리점에 보관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16. 11. 8. E 주식회사에 수리비 6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였고 2016. 8.경부터 미납된 할부금 17회를 그 무렵부터 모두 납부하였다.

마. 2016. 11. 8.경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기준가액은 1,386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원고가 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회수하여 간 다음 원고가 지급하고 남은 17회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1. 8.경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기준가액중 원고가 납부한 할부금에 해당하는 8,951,250원(=

1,386만 원 × 31/48)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할부대금을 원고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 서 그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거나 이를 부담하려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6. 7.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할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자동차 수리점에 이 사건 승용차를 방치하여 둔 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명의 신탁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취할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2016. 7.경 이후 할부대금 납입을 지체하다가 2016. 9.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할부대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경까지 할부대금을 할부금융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할부대금을 F에 자동이체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장애인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되 원고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대가로 할부대금을 납입받은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2014. 2. 12.부터 2016. 3. 13.까지 속도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견인비,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가 위 D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7가소6404)에서 D은 이 사건 승용차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된 차량이라고 다투었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D이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부담한 할부대금의 비율에 따른 매수대금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내부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될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매수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양시호, 판사 안현진